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7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연구보안관리심의회
- 제3장 보안등급의 분류
- 제4장 보안조치
- 부칙

작성부서	산학협력단	제정일자	2012. 06. 04.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서 명							
일 자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원대학교 연구관리업무규정 제38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동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위탁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보안관리심의회

제4조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4/7

-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보고) 산학협력단장은 제4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등급의 분류

제5조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5조에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5/7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심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안등급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조치

제8조 (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의 보안)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 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과제의 연구결과물 반출, 대외제공, 공개 시 사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안사고의 보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 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및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안책임) ①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연구사업과제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보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연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보안사고의 처리를 어렵게 한 경우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	
		제정일자	2012. 06.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4.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5조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0조의2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 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 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 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해당과 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 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 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제10조 관련)

보안서약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 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현황 (제12조 관련)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1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2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기초사업,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사업, 바이오사업,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사업,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3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사유
			년도	년도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4]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Y / N)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Y / N)		관련 대책 별첨

5]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07년도	'08년도		
			...~~ ...		

6]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7]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구 기관 장: (직인)

전문 기관 장 귀하